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9654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개명전 C)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9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D 주식회사)는 2009. 2. 3.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기 전인 2008. 8. 14. ‘F의원’을 개업하고 있던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G의 원고에 대한 아래 시설대여(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1) 리스물건: 피부치료레이저
- 2) 취득원가: 165,000,000원
- 3)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 4) 월 리스료: 5,324,100원
- 5) 지연손해금률: 연 23%

다. G은 2008. 8. 14. 위 리스물건을 수령하였고, G이 위 리스계약 시 약정한 “상환스케줄”에 의하면 G은 2008. 9. 13.부터 2011. 8. 13.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었다.

라. 위 리스계약(갑 제7호증)에 의하면, 고객이 리스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납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그 사유를 최고한 후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1조 4항),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미회수취득원가의 10% 상당 금액을 “규정손실금”으로 별도로 상환하게 되어 있다(제19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시설대여계약서), 갑 제1호증의 2(리스계약별표), 갑 제7호증(리스계약약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1) 갑 제3호증(해지채권상세내역서), 갑 제5호증의 1(상환스케줄), 갑 제6호증의 1(채권액계산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위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를 2010. 5. 13.의 21회차 납입분부터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연체하자, 원고가 2010. 10.

1.자로 앞서 본 해지조항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통지가 그즈음 G에게 도달한 사실, 이 해지에 따라 2010. 10. 1.을 기준으로 G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는 아래 표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분	채권액(원)	비 고
미회수원금	55,739,456	25회차까지의 리스료 109,260,544원을 정산한 잔여 원금
규정손실금	5,573,945	미회수원금의 10%
기간이자	274,879	위 미회수원금에 대한 기간이자
연체금액	24,808,309	2010. 10. 1. 기준 연체리스료
합 계	89,396,589	이자는 별도

※ 미회수원금: 165,000,000원 - 109,260,544원 = 55,739,456원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G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채권액 86,396,5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G은 2010. 10. 1. 이후 2022. 9. 13.까지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2(해지채권상세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이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모두 충당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G의 위 변제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갑 제7호증(약관)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G이 미납한 리스료는 원고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규정손실금이 “제1차년도초 181,500”, “제2차년도초 126,916”,

“제3차년도초 66,615”로 기재되어 있는데(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리스료 상환 스케줄상의 금액과 대비해 보면 미회수원금의 10% 금액과 일치하므로, 갑 제7호증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은 계산 및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2010. 10. 1.자 리스계약해지로 인하여 피고의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었고, 피고는 위 리스계약 해지 후 G으로부터 위 리스기기를 회수하여 제3자 등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회수원금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G에게 위 리스기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미회수원금을 증가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무관한 원고와 G 사이의 새로운 계약관계로서 피고는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은 2010. 10. 1.까지 발생한 연체리스료 24,808,309원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1. 이후에도 G이 2011. 5. 27. 354,400원, 2011. 9. 22. 16,664,653원, 2013. 12. 31. 9,000,000원, 2014. 12. 31. 13,500,000원, 2015. 12. 31. 18,000,000원, 2017. 1. 2. 20,500,000원, 2018. 1. 5. 5,000,000원, 2022. 7. 19. 5,152,247원, 2022. 9. 13. 5,430,698원, 합계 93,601,9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갑 제6호증의 2),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이미 변제되어 피고의 책임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보증의 대상인 주채무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진 원인관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발생소멸함으로써 증감변동하는 특성을 띠고, 이러한 주채무가 일정한 사유로 증감변동을 멈추어 확정되고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와 같이 확정(특정)된 잔존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고,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일정한 해지사유(예컨대, 보증의 경위,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보증인의 지위 변동,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있으면 보증인이 계속적 보증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한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보증한 주채무는 점차로 그 액수가 줄어들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할 뿐 발생 여부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은 계속적 보증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피고 본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다),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지로 인하여 그 해지시점에 피고의 보증채무도 이미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정되었으며, 그 보증채무 중에는 주채무자 G이 리스물건을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장래의 미회수원금채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만약 그 확정 이후 G이 리스 물건을 반납하면 미회수원금의 액수가 줄어들 뿐이며, 그 회수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증인인 피고가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 등을 이용하여 G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원금채무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등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며, 원고가 G에게 위 리스기기를 계속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G이 최초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G 사이에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와 G 사이에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이 2010. 10.

1.까지 발생한 연체리스로 24,808,309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1. 이후 G이 변제한 금액이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이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 이상 그와 같은 변제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책임 제한 및 변제로 인한 책임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소멸 주장

가) 피고는,「위 리스계약은 실질적으로는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되는 일종의 할부계약이고, 매월 분납하는 납부금은 그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마지막 회차 납입분도 2014. 8. 14.경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22. 4. 12.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리스계약에 부수하여 리스기간 만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리스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그 잔존액의 이자조로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이자부분만이 따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성격과 판례가 제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리스계약 해지일인 2010. 10. 1.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22. 4.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2(결정), 갑 제6호증의 2(해지채권상세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2010. 10. 5. 36,240원, 2011. 9. 22. 16,664,653원, 2013. 12. 31. 9,000,000원, 2014. 12. 31. 10,000,000원, 2015. 12. 31. 8,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8. 1. 5. 5,000,000원 등 위 리스료 채권 중 일부를 스스로 입금한 사실(다만 2011. 9. 22. 입금한 돈은 경매에서의 배당금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G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회단15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타채624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G의 예금채권에 집행을 하여 2022. 7. 19. 5,152,247원, 2022. 9. 13.

5,430,698원을 각 추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는, 전체 채무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 제168조 제3호)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G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권은 최소한 2010. 10. 5.부터 2018. 1. 5.까지 간헐적으로 여러 차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G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도 2018. 1. 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어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 86,396,5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